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등〉

■ 양부남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3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10. 31.
3. 회부연월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면 이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커짐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예산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증액되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을 설치토록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

개정안은 ① 현행법상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지자체의 예산 신청, 지자체의 예산 신청을 반영한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을 삭제하고, ②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하도록 하며¹⁾, 현행법상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근거(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관련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25.10.31)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u>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u>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등) <삭 제> <삭 제> ③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현행	개정안
<u><신설></u>	<u>한다.</u> <u>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u> <u>2.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u> <u>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u> <u>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u> <u>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u> <u>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u>
<u><신설></u>	<u>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u> <u>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u> <u>2.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정산</u> <u>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실태조사 지원</u> <u>4.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지원</u>

현행	개정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u>대한 원리금 상환</u> 6.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u>위한 경비의 지출</u>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 <u>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u> <u>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u> <u>원</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 규모는 3,000억원에서 최대 1조 2,522억원까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동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액이 편성되는 등 사업예산이 불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예산 편성의 유동성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의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본예산	10,522	6,053	3,525	3,000	-
	추경예산	12,522	7,053	3,525	3,000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2024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 2-1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여 동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부담할 것인지 분담비율 확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다른 기금을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셋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경우 복권기금에서 수입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기금에 배분할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및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